



환경보건교육 온라인 학습터 전문자료

【어린이 활동공간】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 제도 안내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 제도 안내

"2019년 5월 2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건축물석면조사 의무대상입니다."

다만, 2019년 5월 22일 이전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이미 실시한 어린이집은 아래의 절차를 통하여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석면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인정신청 미대상

- ① 연면적 430㎡ 이상이면서 기존에 지자체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 ② 건축물 착공신고일이 2009. 1. 1일 이후인 경우

경우1. 2019년 5월 22일 이전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이미 실시한 어린이집
: 관할 유역환경청*에 사전 석면조사 인정 신청 후, 인정통보를 받고 1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결과 제출

*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지역: 광주, 전남, 제주, 경남 하동·남해

경우2.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어린이집
: 2020년 5월 21일까지 석면조사기관*을 통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받고,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제출

* 석면조사기관 현황 :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접속 > 고객마당 > 공지사항 > 공지에 석면조사기관 현황
게시글 클릭

◎ 제출방법

- 건축물 소유자가*
 - 2019년 11월 28일까지
 -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asbestos.me.go.kr>)에 회원가입하여
 -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용), 건축물석면조사결과서,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인 경우)를 첨부하여 신청
- *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를 확인한 후 소유자가 신청해야 함

◎ 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관리동의 경우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 입주자대표회의(법인)로 가입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 동일한 법인명으로 가입하고 신청)

Q. 임대아파트의 경우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 그 건축물 소유자(예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가입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Q. 건축물석면조사결과서 전체를 올려야 하나요

: 전체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전체를 첨부안하실 경우, 최종적으로 불인정 통보가 납니다)

Q. 연면적 430㎡ 미만의 어린이집인데 기존에 위 사이트에 가입해서 제출했었는데 또 해야 하나요

: 과거에 제출하셨던 건은 법적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이었으므로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새로 가입하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Q. 석면조사를 받았는데 또 환경청에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 환경청에 또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법적 의무대상이 아니었을 때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신 후 받으신 건축물석면조사결과서를 환경청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Q.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발급 받나요

: '세움터'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건축물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 주의사항

- 회원가입 시 '※인정제도 관련 대상자'에서 건축물소유자에 따라 개인, 법인, 기관 선택 (회원가입을 잘못할 경우 다시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건축물소유자가 법인일 경우 대장 등의 소유자 명칭과 똑같이 법인명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 법인명이 '사회복지법인A'인 경우 '사회복지법인A' 모두 입력)
- 건축물소유자가 법인일 경우 첨부하시는 사업자등록증 등은 어린이집의 것이 아닌 건축물소유자의 것이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업로드 시 첨부파일을 보시고 건축물 종류에 따라 건축물대장 첨부 (건축물 종류에 따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대장이 다름)